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한 선 미 의원)

의안 번호	24-35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4. . .

발의자: 한선미,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  
김승수, 남해석, 백남환, 오욱자

## 1. 개정이유

가족을 위한 돌봄 노동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경력을 보유한 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, 나아가 양성평등한 문화 속에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 변경
- 나. 경력보유여성 및 돌봄 노동 정의 신설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
- 다. 용어의 정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(안 제4조)
- 라.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 및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마포구민의 참여(안 제5조)
- 마. 경력보유여성의 권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바.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(안 제7조)

사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아.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 사업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자.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,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### 3. 관계법령

가.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, 제13조, 제14조

### 4. 조 례 안 : 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### 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4. 3. 26. ~ 4. 2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경력보유여성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노동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  - 나.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2. “돌봄 노동”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, 어린이, 장애인 등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3. “경제활동 촉진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교육기관 및 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
4. “사용자”란 사업주,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, 단체, 법인 등에 적용한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구민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)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,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7조(시행계획) ① 구청장은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 사업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1.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
2. 일경험 지원 사업
3.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 사업
4.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·문화적 인식개선 사업
5.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홍보)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

### ( 약칭: 여성경제활동법 )

[시행 2022. 6. 8.] [법률 제18549호, 2021. 12. 7., 전부개정]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직업교육훈련)**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14조(일경험 지원)**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

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 
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해당사항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조현욱
연 락 처	02-3153-8924